

청주 흥덕지역 주택조합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월곡길 4, 4호
T 043-286-9700 Fax 043-233-1634

문서번호: 청주 흥덕지역 주택조합 22-06-15

시행일자: 22-06-15

수신: 충북도청 노인장애인과

참조: 업무 담당

제목: “청주 흥덕 칸타빌 더 뉴”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 의뢰의 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에서 2022년 7월 中 공급 예정인 ‘청주 흥덕 칸타빌 더 뉴’ 아파트 공급과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명단을 요청하오니, 해당 기관에서는 특별공급 기관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2022년 07월 13일(수) 오전 10시까지 추천자 명단을 아래 업무 담당자에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신기한까지 대상자 명단 회신이 없을 경우 특별공급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대상자 및 일반공급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별첨 된 안내문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안내해 주시어 공급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부탁드립니다

※사업 주체에서는 주택형별로 특별공급 대상자(추천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의 명단을 확정하여 특별공급 접수 영업 2일전까지 한국부동산원에 통지해야 하므로, 회신기한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가. 공급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99-4번지 일원
나. 공급 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1층, 지상 22층 4개동, 총 334세대 中 일반분양 149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대수

구 분	59A	59B	74	84
장애인	추천 대상자	1	1	1
	예비 대상자	3	3	3

※ 예비 대상자 선정 비율은 추천 대상자의 300% 예비 대상자를 선정

※ 신청 자격요건은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추천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 추천 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일정에 따라 신청일시 및 공급 내역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통지 예정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문의 : 대표번호 043)233-1633

※ 업무담당자 : 부장 엄성율 / (mobile 010-8946-9534 / yielding01@hanmail.net)

(공문게시時 업무 담당자 개인정보 삭제 요망)

붙임 :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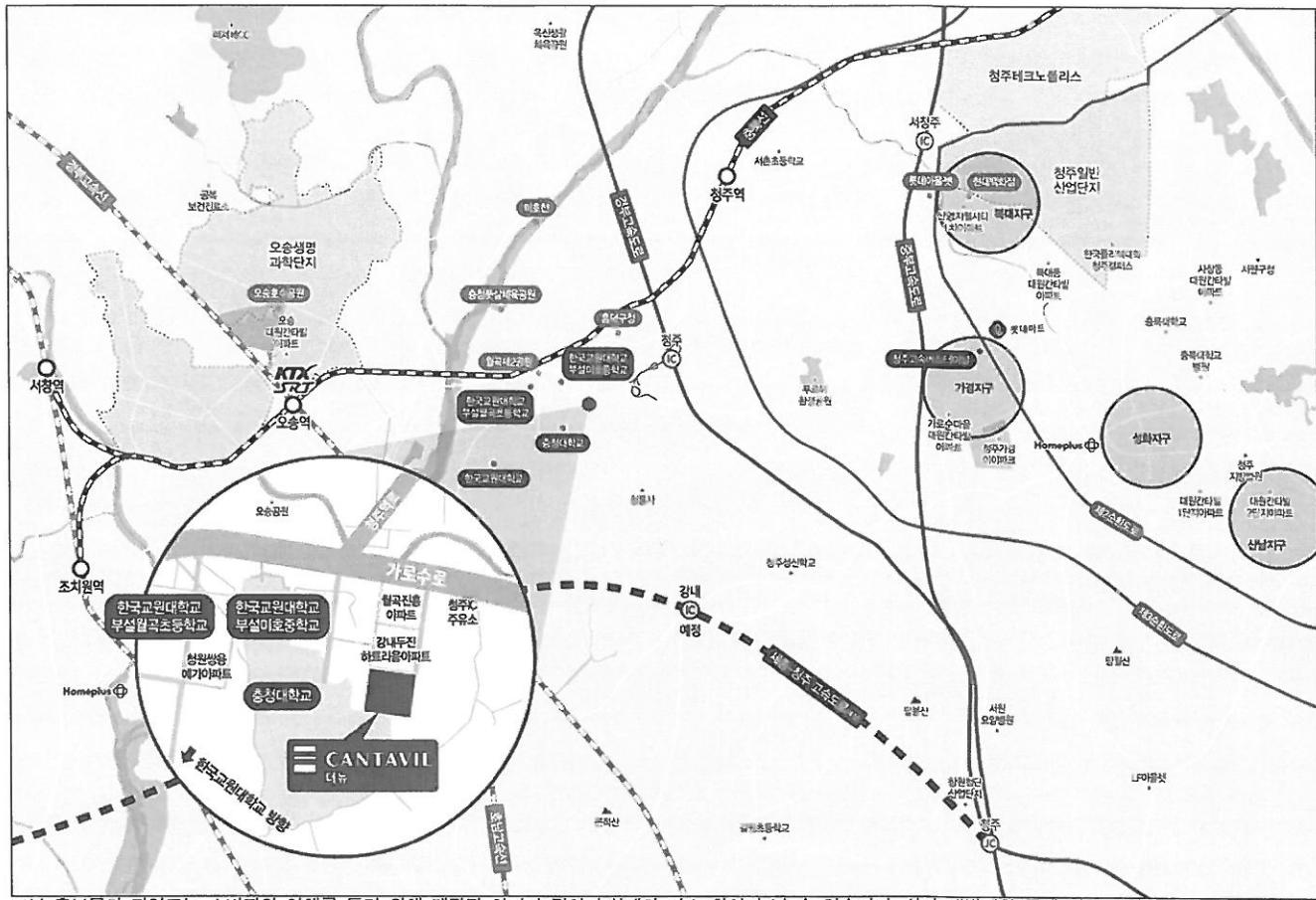
청주 흥덕지역주택조합

직인



구 분	내 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타 특별 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에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요건, 청약자격 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 신청자 나.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면서 주택 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 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 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시행일('18.12.11.) 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 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 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을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분양권 등을 시행일 이후 매매등으로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해당 청약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 특별공급을 1회에 한하여 공급 가능) -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자체 철거민 등은 제외) - 부적격 당첨으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내에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청약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 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주택의 동·호배정은 동별 층별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 공급 당첨자와 함께 주택형 별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며, 당첨 동·호수의 변경이 불가능하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동·호수 배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예비 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의 같은 주택형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한 특별공급 당첨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명단관리(통장을 사용한 경우 재사용 불가, 재당첨제한기간 중 당첨제한 등)됨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배정은 당첨자 발표일에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개별 조회 가능합니다. (개별통지 불가, 본인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중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가 있는 경우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청약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등, 장애인은 제외)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만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청주시 및 충청북도 거주자</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서울시 및 부산광역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m² 이하</td> <td>200만원</td> <td>25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m² 이하</td> <td>300만원</td> <td>400만원</td> <td>6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m² 이하</td> <td>400만원</td> <td>700만원</td> <td>1,0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500만원</td> <td>1,000만원</td> <td>1,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청주시 및 충청북도 거주자	그 밖의 광역시	서울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m ²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m ²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m ²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구 분	청주시 및 충청북도 거주자	그 밖의 광역시	서울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m ²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m ²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m ²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4. 위치도



*본 홍보물의 지역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이며, 실제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삼기 개발계획 등에 대한 사항은 추후 관계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 될수 있으며, 이는 당사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청약신청 및 계약 전에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 견본주택 현장, 관계 기관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5. 약도(모델하우스 위치)



6. 문의사항 안내

대표번호

☎ : 043)233-1633

Fax : 043)233-1634

홈페이지

www.hd-cantavil.co.kr